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박지현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,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(안 제11조)
-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2조의2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7조, 제13조, 제15조)

5. 검토내용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인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(이하 “법”)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,
- 법은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환승·연계의 문제,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정도의 편차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

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(법 제16조제3항),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됨(법 제16조제9항).

참 고

법 개정내용

현행	개정안
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 ① ~ ② (생략)	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 ① ~ ② (생략)
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·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	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·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·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.
④ ~ ⑧ (생략)	④ ~ ⑧ (생략)
<신설>	⑨ 시장,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<신설>	⑩ (생략)

[시행일: 2023. 7. 19.] 제16조

- 이에 따라 우리 도의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(안 제11조),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(안 제12조의2)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다만, 개정된 법 제16조의 시행일이 '23. 7. 19.인 것을 고려하여 안 제11조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도 부칙으로 '23. 7. 19.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함.

-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례안 예고('23. 6. 2. ~ '23. 6. 8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,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